

제13조(수당·여비)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청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7월 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7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제1차 시민보사위원회('94. 7. 13)

2. 提案說明의 要旨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동법 동규칙 제7조 제3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의료기관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50,000원”으로 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 30,000원”으로 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수수료 20,000원”으로 하고,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수수료 10,000원”으로 하며, “안경업소개설등록 수수료 10,000원”은 개정전('92. 7.16)의료기

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과 같이 정하며, “치과기공소인정수수료 2,000원”은 개정전 의료기사법 제13조 2항 규정과 동일하게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조대현)

- 1.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88. 5. 1 조례 제26호로 제정되고 '90. 3. 28 조례 제117호로 개정된 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에 “다”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중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때 보건소도 인허가 및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있어 “다”항의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표현한 것을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나머지 여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의 要旨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7. 13 윤태봉의원의 1인 발의
- 나. 수정이유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에 “다”항 신설내용중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때 보건소도 인허가 및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
- 다. 수정 주요골자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 “다”항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을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으로 수정

5. 審査結果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호	제출년월일 : 1994. 7. 13 제출자 : 윤태봉의원의 1인
----------	---------	--

1. 수정이유

○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에 “다”항 신설내용중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때 보건소도 인허가 및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

2. 수정 주요골자

○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 “다”항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을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생략</p> <p>2. 각종 인·허가및신고등사항 (19종)</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u>신설</u></p>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현행과 같음)</p> <p>2. 각종 인·허가및신고등사항 (25종)</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u></p> <p>(1) 종합병원개설허가 1건 50,000원</p> <p>(2)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의 개설허가 1건 30,000원</p> <p>(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1건 20,000원</p> <p>(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건 10,000원</p> <p>(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p> <p>(6)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1건 2,000원</p>	<p>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가. (개정안과 같음)</p> <p>나. (개정안과 같음)</p> <p>다. <u>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4
----------	-----

제출년월일 : 1994. 7.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동법 동규칙 제7조 제3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의료기관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종합병원 개설

허가 수수료 50,000원"으로 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 30,000원"으로 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수수료 20,000원"으로 하고,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수수료 10,000원"으로 하며, "안경업소개설등록 수수료 10,000원"은 개정전('92.7.16)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과 같이 정하며, "치과기공소인정수수료 2,000원"은 개정전 의료기사법 제13조 2항 규정과 동일하게 함.

3. 관련법규

- 의료법 제30조 제3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4.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생략</p>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19종)</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신설</p>	<p>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p> <p>1. (현행과 같음)</p>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25종)</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p> <p>(1) 종합병원개설허가 1건 50,000원</p> <p>(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30,000원</p> <p>(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1건 20,000원</p> <p>(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1건 10,000원</p> <p>(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p> <p>(6)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1건 2,000원</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란 “다”항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 신설하여 (1), (2), (3), (4), (5), (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1) 종합병원개설허가 1건               | 50,000원 |
|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 30,000원 |
|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1건 | 20,000원 |
|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변경 1건    | 10,000원 |
|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 10,000원 |
| (6) 치과기공소 인정신고 1건             | 2,000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